공고 제2021-033호

오픈아카이브 개편 사업 용역
입찰 재공고

입찰건명	규격	추정금액	용역기간	입찰방법
오픈아카이브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107,000천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픈아카이브 개선 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오픈아카이브 개선 사업 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사업 금액: 금107,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입찰과 제안요청 관련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일정

가. 공고시작일시: 2021. 5. 11.(화) 14:00

나. 접수마감 일시(접수마감): 2021. 5. 17.(월) 14:00

다. 접 수 처: 조달청 나라장터

라. 접수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마. 제안서 설명 및 기술평가 일시: 입찰 마감 이후(별도 통보)

바. 평가 장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온라인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시행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 출력본(요약본 포함)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제출해야 함.

사. 문 의 처

○ 사업관련: 사료관 031-361-9562(사업 담당자)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031-361-9534(계약 담당자)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업회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임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의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

사. 대기업 참여 여부 :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참고

대상업체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비고1.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비고2.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3. :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증서 제출)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 제출 서류 (1부, 제안요청서의 서식 참조)

가. 기술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나. 입찰서류 및 가격제안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격제안서 1부
- 청렴계약서 1부
- 입찰보증금(계약금액의 5/100이상)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마.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작성 관련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 결정한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와 요약서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 A4 기준 종 방향 원칙,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제안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되 30쪽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사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표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등

나. 제안서 평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다. 평가기준(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8. 선정 및 결과 통보 등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합니다.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

고, 가격협상 기준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라.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면 심사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사업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 입찰 결과는 계약 체결 후 우리 사업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입찰(계약) 관련: 경영지원실 031-361-9534(계약 담당자)

○ 사업(과제) 관련: 사료관 031-361-9562(사업 담당자)

붙임 제안요청서 오픈아카이브 개선 사업 제안서 1부